

Vol. 98 September 2016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6

**“국제재판소 없으면
반인륜범죄 처벌 불가”**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표지인물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

인터뷰 ‘조세’ 임승순, ‘보험’ 조성극 변호사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司法觀

유정한 변호사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한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NH금융지주는 농업 관련 금융수요가 높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KB은행은 핀테크 확산 붐에 발맞추어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통해 디지털뱅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41개국에 401개 해외점포 운영

최근에는 국내 영업 환경이 악화된 여전사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신한카드, 하나캐피탈은 현지 대형 금융회사와 합작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고, KB캐피탈과 KB카드도 라오스의 대표적 한상기업인 코라오그룹과 합작하여

라오스 진출을 준비하는 한편 미얀마, 베트남 등지의 진출을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세계 41개국에서 401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붐은, 저성장 · 저금리 · 고령화에 직면하여 정체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금융산업이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은 성장잠재력, 선진 금융기법과 제도 전수를 통한 시장 선점가능성,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지리적인 근접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금융한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동일한 금융지주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한도규제(개별한도 :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20%) 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담보를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신용공여를 받는 계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인 경우 위와 같은 담보확보 의무를 일괄하여 면제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담보확보의무 일괄 면제

그리고 금융지주회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지원(대출, 채권인수 등)을 하는 것만 가능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해 왔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역시 명확하게 허

“ 금융산업 미성숙한 동남아 국가 한국 금융회사에 매력적인 시장 ”

용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열 해외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보증에 터 잡아 현지통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했다.

계열금융기관 보증 허용

이와 같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들 역시 금융환경 촉진을 위한 그간의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실무적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해외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금융지주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진출 대상국가의 법령상 규제 때문에 (또는 합작 상대방과의 협상 결과) 투자대상 해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 의무(50% 이상)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투자대상 해외법인이 '공동출자법인(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 변동이 어려운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투자

대상 해외법인의 발행주식을 30% 이상만 취득하면 된다.

문제는 투자대상 해외법인의 출자자 간의 지분 변동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공동출자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령 주주 간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right of first refusal이나 tag-along right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총주주의 동의나 이사회 승인 등을 요건으로 하여 주식양도를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하는지) 법령상, 실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소명하면 보다 완화된 주식소유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불명확성이나 금융당국 소명 의무 발생으로 인해 체감하는 부담감은 적지 않다.

또 다른 예로 금융회사가 다른 국내 기관투자자와 합작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exit plan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주주 간 계약에 출자지분에 대한 put option이나 call option을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신고를 해야 할까?

“트렌드 주도 금융사 해외진출 새 경제 활력소 자리매김 기대”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취급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신고예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는 비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신고담당기관인 한국은행은 이 경우 역시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것이고 거주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외화유출의 위험도 없으므로 신고대상거래가 아니라는 비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환거래신고 실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 한은 입장 달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의 현실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 즉 ICT와 금융의 결합과 맞물려 당분간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유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